

C.V

Số:
Ngày: 16.13.2023

ĐẾN

Chuyển:

Duyệt: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간의 한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및 도입 세부 협의서

Quyết P. Việc làm
16-3-2023
No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과 베트남 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에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해 양측은 적극 협조한다.

양 국가 간의 현행 규정 및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으로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및 협의 범위

1. 목적 및 협의 범위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및 베트남 하남성인민위원회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해 양측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협조한다.

나. 양 국가의 각 지방 간에 한국 농업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서는 베트남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해 주는 동시에 한국의 선진기술(특히 농업)을 도입하여 베트남 하남성의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기관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아래에서는 "봉화군"이라 칭함). 봉화군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보험비 등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다.

나. 하남성 인민위원회의 한국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설발 및 파견 이행기관으로 위임 받는 베트남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 (아래에서는 "노동-보훈사회국"이라 칭함). 베트남은 항공료,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다.

제2조선발대상 및 기준

1. 선발대상

가. 베트남 관할 기관에서 법적 거주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협의서 체결 지방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행위능력을 충분히 가진 범죄경력이 없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출국이 금지 또는 정지되지 않은 해외 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나. 나이 : 30세 이상 ~ 50세 이하

다. 성별 : 남, 여 구분 없음

라.직업 : 농업 종사자

마.입국대상: 의료기관에서 지정한 병원의 음성PCR테스트증명서를 가진 자

바.제외대상 : 범죄경력자,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무직자, 활동성 결핵 등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임신한 사람,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2.근로선발요구

가. 파견인원 :연간 약 50명 ~ 200명 이상(구체적인 근로인원은 매년 협의하며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결정함.)

나. 농작업:사과, 고추, 수박, 감자, 채소 등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다. 파견 및 거주 지역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라. 선발기간:매년 2~4회 3개월 ~ 5개월 예정 (시기: 2월부터 10월까지)

마.근무기간: 1회 90일 또는 1회 150일간

제3조 근로조건

1.근로기준(도입측은 다음과 같은 근로 조건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한다.)

가.근무기간: (3개월) 90일 또는 (5개월) 150일

나.규정 근무기간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점심시간 제외), 1주 6일(48시간) 적용 (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와농장주가 협의하여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휴식기간 :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부여한다.

라.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을 위하여 10km이상 이동 시에는 이동시간을 휴식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30일(1달) 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으며, 휴일을 비가 오는 날로 대체 할 수 있다.

바.임금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제 적용

사.급여(임금)는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하며, 농가 배정 이후 근로시작일 부터기산되고, 1개월(30일) 근로 시마다 정산한다.

아.근로자와 농장주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임금은 대한민국 최저임금 적용.

2. 숙식 및 생활 조건

가. 농장주는 계약 이행 시간동안 근로자에게 화재감지장치와 난로, 냉각 장치가 충분한 안전한 숙소를 배정할 책임을 진다.(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은 숙소로 제외)

나.근로자의 숙식은 근로자가 월말 급여일에 20%정도(1개월 30만 ~ 40만원 정도, 월 209시간 기준)이내를 부담한다.

다.최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이상 고용을 보장하여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활동을 지원한다.

C-4자격(90일 체류)	최소 68일(75%)이상 고용 보장
E-8자격(150일 체류)	최소 113일(75%)이상 고용 보장

3.근로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가.농장주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보호장비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나. 근로자는 근무시간동안 노동안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다.항공료는 근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의 출국 항공료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봉화군이 지원한다.

라.입·출국 시 공항과 봉화군 간의 이동은 봉화군에서 부담한다.

마.대한민국어 교육, 파견 교육:국가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기관의 등록금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 및교육 훈련 분야 등록금 면제 및 감면, 학업비 지원, 서비스 가격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2021년 8월 27일자 베트남정부 규정의 시행령 제 81/2021/ND-CP호에 의거한다.

바.신청서류비, 건강검진비, PCR테스트비, 여권수수료, 범죄경력증명비용, 번역공증비, 국제여행보험비, 편도 항공료, 비자신청수수료, 의류비, 사진촬영비 등 출국에 관련하는 기타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사.보험: 근로자 입국 후 농장주 부담으로 산업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1)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하며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상해는 근로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2)대한민국에서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의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출국 전 가입하고 부담하며 이는 국제여행자보험 형태로 한다.(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름)

아.치료비: 근로 중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기관에서 부담하며,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부상 및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단, 근로시간 외 작업장(농장)내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씩 부담한다.

자.근로자의 노동규칙, 법률 위반 등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과 고용주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진단,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기한 만료 및 계약 해지

가.근로자의 근로기간 중에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을 해지 시 고용주는 근로자와 협의(있을 시)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국비용을 지급한다.

나.근로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국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 하에 근로자의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의 사유 발생 시 봉화군은 시정 조치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마.입국 후 건강검진서에 나와 있는 질병이외에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또는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할 경우 농장주의 신고를 받아봉화군은 확인 후 근로자를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제4조. 하남성노동-보훈사회국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1. 계절근로자는 하남성이 직접 선정하고 송출하고 베트남노동부,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관련 업무를 사인·단체에게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MOU체결,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관련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MOU를 취소할 수 있다.

2. 베트남 노동부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규정에 따라 파견 측 외 이중계약을 금지한다.

3.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어 교육 및 파견 교육을 한다. 계약에 따른 계절근로자에 대한 양 국가의 법률 규정의 집행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4. 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행정 절차 (건강검진, 비자신청, 해외 취업허가, 여행자 보험 등) 지원을 담당한다.

5. 봉화군과 주한 베트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한과 이익을 관리·보호하며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6. 계약이행보장방법:

하남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가. 계약에 따라 해외근무에 관한 양국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해서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교육한다.

나. 계약이행에 대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과 서약서를 체결한다.

다. 가족(친부모, 친형제, 배우자 등) 중 한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7. 입국 절차 진행 중 코로나 19 예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8. 계절근로자 이탈발생 시 하남성은 근로자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한 대한민국 법무부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봉화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1. 선발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와 사증(Visa)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하남성에 제공하며 본 협의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제도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하며, 또한 관련 업무를 사인·단체에게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MOU체결,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가 오간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MOU를 취소할 수 있다.
2. 본 협의서 범위 내의 한국 계절근로자의 입국 및 근무가 잘 되고 한국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노동-보훈사회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입국 전 근로자 선발을 위하여 근로자가 준수 할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공하며 충분하고 상세하게 안내한다. 봉화군 농업, 문화 등에 관한 기본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근로자 상담을 위해 베트남어 통역을 무상 지원한다. 근로자가 베트남 행정기관 또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협의서와 베트남의 규정에 적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
4. 노동-보훈사회국과 주한 베트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한과 이익을 관리·보호; 한국의 노동과 거주에 대한 규정 준수에 근로자를 감시,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5. 불가항력적인 상황(재해, 전쟁, 재난 등)에서 봉화군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노동-보훈사회국과 협조하여 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한다.
6. 근로자가 사망 시 봉화군 및 고용주는 주한 베트남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사망자의 신체, 유해 및 개인 재산의 베트남으로 귀환절차와 비용은 고용주 또는 봉화군이 부담하며근로자가족이보험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7. 무단이탈(불법체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절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계약 종료 후 근로자의 귀국을 보장하도록 절차 진행 중 코로나 19 예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8. 근로기간 중에 근로자를 관리해야 한다. 무단이탈 발생시 봉화군은 고용주와 협조하고 베트남 당국에 통보하여 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이 불법이탈한 근로자의 가족을 동원하여 근로자가 한국 당국에 자진신고 및 출석하게 설득할 것을 협조한다.
9. 봉화군은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불만 해결

본 협의서 이행 중 분쟁이나 불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협의로 해결한다.

제7조협의서의유효기간및해지

1.본협의서는 2023년 2월 24일에 베트남 하남성과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체결되며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영어, 대한민국어, 베트남어로작성하고해석이 다르게 판단될 경우가 있을 시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본 협의서는 양측의 대표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2023년 02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이후에도 양 측의 변경 통지가 없다면 매년 자동 연장하되 2026/12/31 (2022년 4월 27일자 베트남정부 59/NQ-CP호 결의에 따른 기한)만료된다.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한 측이 상대방에게 협의서의 만료일 30일이상 전에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서 변경은 양측이 문서로 협의하고 본 협의서와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3.이행 중 본 협의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예상 해지날60일이상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지는 통보 전 이행한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2년 07월 18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간의 한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및 도입 세부 협의서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만료된다.

2023년2월24일

대한민국 봉화군을 대표하여
봉화군수

박화국 

베트남 하남성노동보훈사회국을 대표하여

국장 

Nguyen Van Hao

